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일부개정고시 알림

- 1.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시험법 개선, 타 법령 이관 물품 삭제 및 용어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식약처 고시)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2. 아울러,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, 동 개정고시는 우리 처 대표누리집(http://www.mfds.go.kr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 고시 등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일부개정고시(2024.11.26.) 1부.
  - 2.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고시전문(제2024-73호)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

54개 전부서), 관련 협회 등 수신자 본부(57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2개 전투

바이오허가TF 전결 2024. 11. 27. 주무관 연구관 조현영 이내리 박현정

협조자

시행 바이오의약품정책과-6604 (2024. 11. 27.) 접수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보건의료행 / www.mfds.go.kr 우 28159 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(바이오허가TF)

전화번호 043-719-3436 팩스번호 043-719-3430 / 대국민 공개 / haniel@korea.kr

힘내라 대한민국!

팀장